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140
----------	-----

제출년월일 : 1996. 8.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개정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 직명 변경
- 관련법령 및 기타 규정·규칙에 따른 사무조정

□ 주요골자

- 당연직위원중 각국장을 각실국장,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직명변경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의 제정·개폐는 충청북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
-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하므로 삭제
- 간행물발간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간행물발간등록으로 대체됨으로 삭제
-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사항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장, 군수 승인사항임으로 삭제
- 위원회를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례회의는 매주1회 개최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 관련분야 정리

□ 관계법령 : 별 첨

□ 조례(안) : 별 첨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각국장"을 "각실국장",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10억원이상

소요예산 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14호중 "유통산업근대화"

를 각각 "유통산업합리화"로하고, 동조 제20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사항"을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제12호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